

# Yeosu Web Contents

2024년 05월 05일 12시 36분





# 목차

목차	2
민원사무편람 및 서식 - 보건행정과	3
건강검진 등 신고	3

## 건강검진 등 신고

2017.03.07 17:34 조회수 211 등록자

✓ 민원사무명	건강검진 등 신고
✓ 민원내용	
✓ 관계법령	지역보건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(별지 제1호서식)
✓ 구비서류	[ 구비서류 ] 1. 의사·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면허증 사본 1부. 2.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1부.(의료기관에 한합니다.)
✓ 처리부서	보건행정과
✓ 협의부서	
✓ 접수	
✓ 수수료	없음
✓ 처리기간	7일
✓ 기타사항	
✓ 흐름도	① 신청서 작성 → ② 종합민원실 접수 → ③ 보건행정과 검토 → ④ 기안결재 → ⑤ 민원인,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(여수시지부) 통보
✓ 기타참고사항	☐ 지역보건법 제34조(과태료) 규정에 의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, 허위로 신고 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

<p>첨부파일</p> <p><a href="#">전체(Zip)다운로드</a></p>	<p> 건강진단등 신고편람.hwp (1471 hit/ 13.5 KB) ↓ <a href="#">미리보기</a></p> <p> [별지 제1호서식] 건강검진 등 신고서.hwp (1404 hit/ 17.5 KB) ↓ <a href="#">미리보기</a></p>
--	--

[목록](#)

COPYRIGHT © YEOSU-CITY. ALL RIGHTS RESERVED.

# Yeosu Web Contents

